

## 징계처분의 공시에 관한 윤리위원회 규칙

2003. 06. .제정

윤리위원회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징계규정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의 공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시의 방법)

- 1) 공개견책,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록전 유자격자에 대한 징계, 잠정적 자격정지 등의 처분은 FPSB Korea 의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에 병행하여 자격인증본부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 (1) 신문공고에 의한 방법
  - (2) 보도자료, 공시자료 또는 이와 비슷한 자료를 통한 공개
  - (3)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또는 기타 잡지를 통한 공고
  - (4) 기타 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

제3조 (공시의 내용) 공시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중 앞번호 6 자리)
- (2) 징계처분의 형식 (단, 이행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조건의 내용 포함)
- (3) 징계의 사유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 (4) 관련규정 또는 법률의 조항

제4조 (공시의 시기) 윤리위원회가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처분의 공시는 동 처분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 공시문을 제외한 징계관련기록은 비밀로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징계규정중 관련 조항

### 제4조 징계의 형식

- 1) 윤리위원회와 조사분과위원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의 입증 가능성이 없거나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확인과 함께 신고기각이나 개선권고와 함께 사안을 종결한다.
- 2) 신고기각이나 개선권고 또는 징계명령과 함께 계속교육의 이수조건 및 동종의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대응책의 이행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 제4.1조 비공개견책

비공개견책은 견책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비공개로 해당회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한다.

#### 제4.2조 공개견책

공개견책은 견책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회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신문광고 또는 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공시방법으로 공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3조 자격정지

- 1) 윤리위원회는 5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2) 협회는 회원의 자격정지의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회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신문광고 또는 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공시방법으로 공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4조 자격취소

- 1)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을 영구히 취소할 수 있다.
- 2) 협회는 회원의 자격취소의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회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신문광고 또는 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공시방법으로 공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5조 등록전의 유자격자에 대한 징계

- 1) 윤리위원회는 회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인증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규정된 징계의

형식에 따라 다음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1) 개선권고 기록과 함께 자격인증의 승인 및 회원가입 등록
  - (2) 견책기록과 함께 자격인증의 승인 및 회원가입 등록
  - (3) 5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기간 자격인증의 승인정지 및 회원가입의 등록연기
  - (4) 자격인증의 승인거부 및 회원가입의 등록거절
- 2) 자격인증의 승인정지에 따른 등록연기 또는 자격인증의 승인거부에 따른 등록거절의 경우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할 수 있다.
- 3) 등록연기의 대상이 된 유자격자는 제15.2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경과 후 회원가입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 잠정적 자격정지

- 1) 잠정적 자격정지란 윤리위원회가 징계조사대상 회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확정될 때 까지 그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이 (1) 제12.5조에 규정된 중대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2) 제12.6조에 규정된 전문직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자금유용이나 자산유용의 죄를 범하였을 때, (4) 공공의 이익 또는 안녕,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되었을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을 때, (6) 협회 또는 다른 회원의 명예 또는 신뢰를 손상하였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잠정적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 3) 잠정적 자격정지의 처분으로 해당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징계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5.1조 소명서 제출요청의 통지

생략

#### 제5.2조 소명요청서의 발송방법

생략

#### 제5.3조 소명서 제출

생략

#### 제5.4조 소명서 미제출의 효과

생략

#### 제5.5조 소명 심문회

생략

#### 제5.6조 잠정적 자격정지의 처분

- 1) 해당회원이 소명요청사안이 제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잠정적 자격정  
지 처분을 확정한다
- 2) 해당회원이 유죄의 판결이나 전문직업무정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재심이 계류중임을 이유로 윤리위원회의 잠정적 자격정지처분의 권한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 **제5.7조 자격의 자동회복**

생략

#### **제5.8조 공고**

회원에 대한 잠정적 자격정지의 처분은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 **제13조 조정신청서**

징계의뢰의 대상회원은 징계의뢰서 발송일 이후 윤리위원회의 최종확정이전의  
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 윤리담당자는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건의안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  
여 심문분과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조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진행중인 해당 징계절차는 중단된다

#### **제13.1조 조정신청서의 내용**

생략

#### **제13.2조 조정신청의 수락**

생략

#### **제13.3조 조정신청의 거부**

생략

#### **제13.4조 공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해당회원의 인적사항  
과 함께 그 사실을 보도자료 또는 기타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공시방법에 따  
라 공고하여야 한다.